

의안번호	2214077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6. 1. 21.
추 계 번호	25A60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¹⁾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분담 규정(제72조의2 제3항) ²⁾ 의 유효기간* 연장 *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2035년 12월 31일까지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지상(공중)에 설치된 가공(架空)전선로와 구조물 등을 지하로 매설하는 것을 의미

2)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¹⁾

- 개정안은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하여 2026년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현행법 제72조의2제3항은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²⁾는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³⁾에 대한 소요 비용의 20%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80% 중 30%는 지방자치단체가, 50%는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에서 부담하였음⁴⁾
 - 개정안은 해당 부칙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을 실시할 때 국가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도록 하려는 취지
- 개정안에 따라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연장되면,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종료되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사업량이 증가하여 국가(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11.24.)에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국비 지원 규정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본회의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개정안의 제정 소요를 검토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음

2)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전선로지중화사업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5154-301)

4)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 관련 지중이설 사업에 한해 총 소요비용의 20%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 현행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국비 지원 규정은 2021.6.15. 신설되었으며,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현재 국가재정으로 분담하고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사업량이 동일하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 합산액은 증가하지 않음
 - 종전(~2021.6.14.): 지방자치단체 50%, 한전·통신사 50%
 - 현행(2021.6.15.~2025.12.31.): 국가 20%, 지방자치단체 30%, 한전·통신사 50%
 - 다만,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을 이유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한다면⁵⁾,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국비 지원 규정이 연장되면 현행대로 국비 지원이 폐지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2026년 이후의 사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⁶⁾의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비 지원이 계속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총 비용에서, 현행대로 국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할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비용(국비+지방비) -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방비)
 - 개정안에 따른 비용: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비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의 총합
 - 현행법에 따른 비용: 국비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할 금액

5)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시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6) 국가 분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보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계속될 때와 폐지될 때의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규모 변화를 각각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비 지원이 계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1건당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므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이에 따른 수요 증가분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국비 지원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20년 이전과 2021년 이후의 사업 규모를 비교하여 수요 변화분을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업 추진이 지속되면서 과거와 비교할 때 통학로 등 안전 관련 지역을 포함한 각 시·도의 배전설비 지중화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를 2026년 이후의 수요 추정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자료 1] 시·도별 배전설비 지중화율 현황(2011~2024년)
 - 참고로, 국비 지원 규정이 신설된 2021년을 기준으로 신설 전·후의 투입 예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 국비 지원 규정 신설 전 과거 10년(2011~2020년) 동안의 평균 사업 건수는 **115건**, 선로길이는 **97km**임. 해당 기간의 소요 예산은 연평균 **1,707억원**이며, 이 중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을 제외한 지방비 소요 예산은 연평균 **854억원**임
 - － 국비 지원 규정 신설 이후 5년(2021~2025년) 동안의 평균 사업 건수는 **113건**, 선로길이는 **75km**임. 해당 기간의 소요 예산은 연평균 **2,250억원**이며, 이 중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을 제외한 국비 및 지방비 소요 예산 합산액은 연평균 **1,195억원** (국비 243억원 + 지방비 952억원)임
 - * [참고자료 2]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실적 및 소요 예산(2011~2025년)

[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국비 지원 규정 도입 전후 사업 실적 비교

구분	연평균 사업건수 (건)	연평균 선로길이 (km)	연평균 투입예산(억원) ¹⁾				
			국비 (A)	지방비 (B)	한전 (C)	국비+지방비 소계(A+B)	합계 (A+B+C)
2011~2020년	115	97	0	854	854	854	1,707
2021~2025년	113	75	243	952	1,055	1,195	2,250

주: 1) 국비지원 지중화사업(국비2:지자체3:한전5 부담) 및 지자체 신청 지중화사업(지자체5:한전5 부담)에 소요되는 전력설비 지중화 공사 투입 비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도별 배전설비 지중화율 현황(2011~2024년)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14.6	15.1	15.5	16.0	16.7	17.1	17.7	18.3	18.8	19.5	19.5	20.9	21.3	21.7
서울	54.7	55.7	56.4	57.2	57.7	58.0	58.6	59.2	59.0	60.3	61.0	61.6	62.3	62.8
부산	34.7	35.1	35.7	36.5	37.6	39.4	40.5	41.0	40.9	42.2	43.1	44.6	45.5	45.7
대구	23.7	24.3	24.4	24.6	27.2	27.7	30.8	31.7	33.0	34.2	34.9	36.2	32.6	32.2
인천	34.0	34.4	35.0	36.3	36.7	37.5	38.2	39.4	41.2	42.6	44.1	46.1	47.4	48.5
광주	28.9	30.3	33.1	33.5	33.9	34.2	34.5	35.7	35.4	36.4	36.5	38.8	38.1	38.7
대전	47.6	47.8	48.4	49.7	53.3	53.7	54.4	55.0	54.2	55.5	57.2	57.7	57.0	57.3
울산	21.4	22.0	22.7	22.9	23.1	23.3	24.0	25.2	25.2	26.0	28.0	29.2	29.6	30.5
경기	21.7	22.6	23.6	24.2	25.0	25.3	26.0	26.7	27.8	28.8	30.4	31.8	32.3	32.9
강원	7.1	7.3	7.4	7.7	8.0	8.1	8.4	8.8	9.5	9.9	10.2	10.9	11.3	11.9
충북	7.7	8.0	8.1	8.6	8.9	9.1	9.3	10.1	10.6	10.9	11.3	12.6	13.1	13.6
충남	5.8	6.3	6.5	7.3	7.9	8.8	9.4	10.2	11.1	11.4	11.7	12.2	12.6	12.9
전북	7.9	8.0	8.2	8.5	9.3	9.5	10.1	10.4	10.9	11.1	12.5	12.6	12.3	12.8
전남	5.1	5.3	6.0	6.5	6.6	7.1	7.7	8.0	8.4	8.6	8.9	9.4	9.4	9.7
경북	4.8	5.0	5.1	5.3	5.4	5.5	6.4	6.5	7.0	7.2	7.4	7.7	7.8	7.9
경남	8.2	8.4	8.6	8.9	9.0	9.7	9.9	11.0	10.9	11.6	12.5	12.9	13.5	13.4
제주	15.1	15.5	16.1	16.8	16.9	17.4	17.6	19.3	19.7	20.2	20.5	20.9	20.9	21.0
세종	—	5.2	6.1	6.8	22.8	24.2	28.8	34.4	40.4	41.5	43.6	46.7	47.0	49.8

주: 1. 2024년 12월 기준

$$2. \text{지중화율 산식}(\%) = \frac{\text{지중배전선로 공장}(C-km)}{\text{총 배전선로(가공+지중) 공장}(C-km)} \times 1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자료 2]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실적 및 소요 예산(2011~2025년)

구 분	사업건수 (건)	선로길이 (km)	투입예산(억원) ¹⁾				
			국비·지방비			국비·지방비 외	합계 (A+B)
			국비	지방비	소계(A)	한전(B)	
2011년	75	96.4	0	537	537	537	1,074
2012년	56	47.8	0	344	344	344	688
2013년	87	102.2	0	653	653	653	1,306
2014년	91	66.0	0	618	618	618	1,236
2015년	116	105.5	0	796	796	796	1,592
2016년	160	126.4	0	1,223	1,223	1,223	2,446
2017년	146	115.0	0	1,200	1,200	1,200	2,400
2018년	114	85.2	0	854	854	854	1,708
2019년	87	65.8	0	638	638	638	1,276
2020년	213	156.1	0	1,673	1,673	1,673	3,346
2021년	209	162.3	120	1,729	1,849	1,850	3,699
2022년	162	99.1	343	1,299	1,642	1,416	3,058
2023년	76	53.7	325	670	995	825	1,820
2024년	65	33.6	261	463	724	582	1,306
2025년	52	27.9	166	597	763	602	1,365

주: 1) 국비지원 지중화사업(국비2:지자체3:한전5 부담) 및 지자체 신청 지중화사업(지자체5:한전5 부담)에 소요되는 전력설비 지중화 공사 투입 비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